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8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58227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시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3. 7. 20.
판 결 선 고	2023. 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8.자로 원고에게 한 취득세 47,107,4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4,710,7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355,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8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28. ○○ ○○○구 B 소재 집합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3층(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대금 1,139,511,700원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에서 정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전액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21. 1. 8.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가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 따라 기존에 감면하였던 취득세 47,107,4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4,710,7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355,3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8.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종전 세입자들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여 이를 인도받는 법적조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8

가 2019. 12. 말경 완료된 점, 원고는 2019. 12. 10.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승강기설치, 건축(대수선)허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 등 보정 및 보완을 요구함으로써 2021. 1. 중순경에야 용도변경허가가 처리되어 그 절차가 지연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9. 6. 28.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1년(2020. 6. 28.)이 지날 때까지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8

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부동산 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에 당해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해당 용도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7 내지 23호증, 을 제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9. 8. 13. 이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 인용결정을 받았고 2019. 8. 29. 위 인도명령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되었음에도, 2019. 12. 10.에야 피고에게 용도변경허가신청을 제출하였다.

② 원고는 2019. 12. 10. 용도변경허가신청 이후 피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건축법령에 따른 대피공간 등의 설계 재검토, 경사로 또는 승강기 설치, 건축(대수선)에 따른 허가신청(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른 관리단집회결의) 등의 보완을 요구받고도 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8

이행을 연기하다가 2020. 6. 3. 용도변경허가신청을 취하하였고, 2020. 6. 29. 용도변경허가를 다시 신청하여 피고와 사이에 수회에 걸쳐 보완요구, 보완연기신청 등을 반복하다가 2021. 1. 26.에야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 피고의 대피공간 등의 설계 재검토, 경사로 또는 승강기 설치, 건축(대수선)에 따른 허가신청(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른 관리단집회결의) 등 보완요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행정지도로 보이는바, 원고도 피고의 관내 다른 곳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취득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이 사건 처분 당시는 물론 2021. 1. 26.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취득일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8

별지

관 계 법 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8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끝.